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 대해 알아본다(Ⅱ)

5. 협상 그룹별 협상 진전 상황 및 우리의 입장

1. 관 세

(가) 협상목표

- 관세인하 : 최소한 동경라운드 수준 (수입액 기준 33% 이상)
- 양허확대 : 대폭적 수준
- 기준세율 : 기양허 품목은 양허세율, 비양허 품목은 '86. 9 실행세율

(나) 협상 진전상황

3. 15까지 관세 인하계획 (offer list)을 제출키로 하였으나 7 월말 현재 Offer List는 우리나라 포함 42개국이 제출 됐으며, 4. 30까지는 Initial Request List를 제출키로 하였으나 7 월말 현재 20개국이 제출(우리나라는 제출 준키중) 됐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관세 협상 목표를 달성한 관세인하 계획을 제출한 반면 대부분 개도국들은 관세 협상 목표에 미달 됐다.

선진국 관세인하율은 평균 39. 67%, 양허범위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100% 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차 offer에서 소극적 양허안을 제시하였으나 양자협상시 관세 협상 목표를 달성하라는 선진국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7월 중순 관세협상 목표를 달성한 관세 양허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1차 offer는 관세인하율 : 10% (GATT는 8% 인상으로 평가), 양허범위 : 70%

수정 offer는 관세인하율 : 33. 5% (17. 44%→11. 59%), 양허범위 : 23%→81% 였다.

기 제출된 R/O List를 토대로 현재 양자협

상이 진행중이며, 7 월 TNC에서 9월부터는 관세, 비관세, 천연자원, 열대산품의 합동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다) 쟁점사항

- 협상 대상에 농산물 분야 포함 여부
- 관세인하 및 GATT에의 양허라는 이중부담을 고려한 개도국의 신규 양허에 대한 Credit 인정방법
- 각국의 관세인하 계획의 질과 양에서의 형평성 확보 문제
- 양자협상 과정에서의 상대국 관심품목의 반영 여부

(라) 우리나라 입장

농산물 포함 여부에 대해서 농산물의 관세 인하는 농산물 전반의 자유화 추진과 연계하여 농산물 그룹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하고 개도국의 신규 Binding에 대한 Credit 부여 여부에서 우리나라는 UR 협상 목표를 충족하였으므로 Credit 부여를 적극 주장할 필요는 없으나 추가적인 양허 요청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여 대응해 나아가고 국별 관세인하 계획의 형평성 확보와 상대국 관심 품목 반영 여부는 각국별로 UR 협상 목표 달성이 필요하나 이를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특정 관심 품목 반영을 위한 deeper cut은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

2. 비관세

(가) 협상목표

수량제한을 포함한 비관세 조치의 완화 또는 철폐

(나) 협상 진전상황

R/O 협상을 중심으로한 협상 진행은 4. 15까지 request list 제출, 5. 15까지 offer list 제출하기로 되었으나 7월말 현재 request list는 우리나라 포함 34개국 제출, offer list는 5개국 제출 됐으며 원산지 규정 및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는 협정 초안이 마련되어 기제출된 R/O list를 토대로 현재 양자협상 진행중이며, 7월 TNC에서 9월부터는 관세, 비관세, 천연자원 및 열대산품의 합동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다) 쟁점사항

○양자협상시 각국 request의 수용정도

- 각국의 request 범위는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 미국, 호주, 캐나다 : 농·공산품에 대한 비관세 조치를 대상
 - EC, 일본, 한국 : 공산품에 한정된 비관세 조치를 대상

○원산지 규정

- 원산지규정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인한 무역왜곡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을 GATT에서 제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위원회를 만든다는 원칙에는 합

주요 쟁점	미국, 일본, 한국	E C
협정의 coverage	• 비특혜 교역뿐 아니라 GSP를 제외한 특혜교역에도 적용되어야 함.	• 비특혜 교역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EC와 같은 관세 동맹에는 동 규범 적용이 배제되어야 함.
원산지 판정 기준의 Harmonization 방법	• CCC에 세번변경 기준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판정 기준의 통일을 위한 작업을 요청 1년내 동 작업을 완료한 후, 동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GATT에서 원산지판정 기준의 통일을 위한 작업을 1년내 완료함.	• GATT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제정하지 않고 CCC내에 원산지 위원회를 만들어 교포협정에 기초한 새로운 원산지 해석 기준의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준수하도록 함.

의하고 있으나 협정적용 대상 및 원산지 판정기준의 통일화 방법에는 주요국간 입장대립을 보이고 있음

○선적전 검사 (PSI)

- 미국 : PSI 회사의 운영 지침에 대한 상세한 협정 체결
- 중도국 (스위스, 스웨덴) : PSI 제도로 인하여 야기되는 무역 왜곡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만 제정
- PSI 채택국가 (자이레 등) : 협정 체결에 소극적임

(라) 우리나라 입장

○R/O 양자협상 : 농산물 및 유망산업의 자유화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수출 주종상품에 대한 비관세 조치 제거에 노력함

○원산지 규정

- 협정 coverage : GSP를 제외한 모든 무역에 적용되어야 함
 - EC역내 통합, EC와 EFTA 자유무역협정 등 특혜무역 협정과 관련된 원산지 규정 문제도 분쟁의 여지가 많음
- 원산지 판정 기준의 harmonization
 - 원산지 규정이 자의적으로 운용되지 않기 위하여는 원산지 판정 기준의 Harmonization이 수반되지 않으면 무의미함
 - 따라서 UR 기간중 CCC에게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 작성을 위한 작업을 하도록 한후 동 결과를 바탕으로 GATT에서 토의하여 확정함

○선적전 사전검사 : PSI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PSI 제도로 인하여 야기되는 무역 왜곡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제정되어야 함

3. 반덤핑

(가) 협상목표

○MTN 협정을 개정, 명료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

(나) 협상 진전상황

수출국 (한국, 일본, 홍콩, 노르디, 싱가포르)

등)은 현행의 반덤핑 규정을 명료화하고 강화하여 이의 남용을 규제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반면 수입국 (미, EC)은 신규 형태의 덤핑 (우회덤핑, 반복, 상승덤핑 등)의 규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조사 절차상의 명료성이 증대되어야 한다는데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 되고 있으나 덤핑 및 피해 판정의 기준, 조사 개시요건, New issues (우회, 반복, 상승덤핑) 등 기타 여러 부분에서 수출·수입국간 상호 입장이 계속 대립되고 있다. 7월초에 의장의 협상초안이 제출되었으나 불균형하게 작성되었다는 수출국 주장에 의해 의장안을 새로이 작성, 제출(8월 중순) 계획이다. 또한 수출국들은 의장안이 선진국 (특히 미국)의 주장하는 우회덤핑, 반복, 상승덤핑 등 새로운 개념을 전혀 수정없이 대폭 수용하고 있는 반면 수출국 관심 사항은 많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반영이 기뻐한다고 강력히 불만을 제기 했다.

(다) 쟁점사항

① 덤핑의 결정

○국내가격 결정시 원가이하 판매의 인정
-미국, EC : 생산원가 이상으로 판매된 경우만 인정

-수출국 :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 이하의 판매도 인정

○구성가격의 산정

-수출국 : 당해 수출업체의 실제이윤, 비용에 기초

-미국 : 특정한 기준의 사전 설정이 예측가능성, 명료성 측면에서 합리적

○가격비교 기준

-수출국 : 수출가격과 국내가격 비교시 모든 거래의 가중 평균을 비교 (Negative dumping 인정)

-미국, EC : 수출가격은 개별거래를 기준으로 비교

○동종상품의 개념

-수출국 : 동종상품 개념의 해석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개념 유지

-미국, EC : 용도가 동일하거나 또는 약간

변형된 경우는 동종 상품으로 인정토록 동종상품 개념 수정

② 피해의 판정

○de minimus 인정

-수출국 : 덤핑마진 (5%) 및 덤핑 수입량 (2%)이 특정수준 이하인 경우는 피해가 없는 de minimus로 인정

-미국, EC : hammering effect로 인하여 수입량에 대한 특정 수준의 de minimus 인정 불가

○누적피해 (Cumulation) 인정 여부

-수출국 : 피해판정은 원칙적으로 각 수입원에 대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단,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강제 규정이 되어선 안됨

-미국, EC : hammering 효과 방지위해 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누적하여 피해 판정해야 함.

○공공이익의 고려

-수출국 : 피해 판정시 소비자 및 수입제품을 사용하는 산업에 대한 이익도 고려

-수입국 : 각 국가의 주권 문제이므로 반대

③ 반덤핑관세 부과

○소멸시효의 인정

-수출국, EC 등 대부분 국가 : 3~5년의 소멸시효 인정

-미국 : 연례 재심의 실질적 운용으로 충분 (소멸시효 설정 반대)

④ New issues

○우회덤핑의 규제

-미국, EC : 조립제품 또는 약간의 변형된 제품의 경우, 별도조사 없이 원래의 AD 관세 부과

-수출국 : 순수한 우회덤핑에 한해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나 엄격한 기준설정 필요 (수출·수입자의 관계 여부 검토, 제3국 조립품은 제외, 변형된 제품은 제외 등)

○반복, 상승덤핑

-미국, EC : 반복, 상승덤핑 규제 조항의 도입으로 조사개시 시점부터 잠정조치 실시

- 수출국 : GATT 6 조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므로 동 개념의 도입은 불가함
- (라) 우리나라 입장

○덤핑의 결정

- 국내가격 결정 : 원가이하의 판매인 경우에도 특정 경우(상당기간, 상당수량)를 제외하고는 국내가격 산정시 인정
- 국내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 구성가격보다 객관적인 제 3 국 가격을 우선 적용
- 구성가격 산정 : 당해 수출업체의 실제 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산정
- 가격 비교 기준 : 수출가격, 정상가격의 비교는 가중 평균치를 기준

○피해판정

- de minimus의 인정 : 덤핑마진(5%), 덤핑수입량(수입국 시장 점유율 2%)에 대해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de minimus의 특정 기준 설정
- 누적피해(cumulation) : 피해판정은 각 수입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단, 예외적으로 누적피해 개념 인정 가능)
- 공공이익 고려 : 피해판정시 소비자 및 수입제품을 사용하는 산업이 받는 이익도 고려해야 함.

○조사개시 및 반덤핑관세의 부과

- 제조자의 대표성 : 국내산업은 국내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소멸시효 : 단기간 구제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 설정
- 재심 및 관세 환급절차의 확립

○New Issue

- 우회덤핑 : 순수한 우회덤핑에 한하여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해외투자 활동을 저해해선 안됨(동 규제 절차는 엄격한 기준 설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 반복·상습덤핑 : 현 code에 반영 반대
 - GATT 6조의 기본원칙(동종상품 개념 등)에 벗어나고 조사개시 부터 잠정조치 실시는 수출자에 큰 영향

4. 무역관련 투자조치 (TRIMs)

(가) 협상목표

무역제한 및 왜곡효과를 가져오는 투자조치와 관련된 GATT 규정의 검토 및 새로운 규정의 추가

(나) 협상진전상황

선진국 입장을 주로 반영한 의장 draft가 작성('90. 5)되어 이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선·개도국간의 대립으로 협상진전이 부진함. -

(다) 쟁점사항

○투자제한 조치의 범위 및 규제방법

- 선진국

- 국산부품 사용의무, 수출의무, 국내 제조의무, 외환통제 등 모든 투자제한 조치는 제거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투자제한 조치의 원천적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함.

- 중도국

- 모든 투자 제한조치는 각국의 경제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거되어야 함.
- 투자 제한조치의 원천적 사용 금지는 무역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TRIMs에 한정되어야 함. (국산부품 사용의무, 수출의무)

- 개도국 (인도, 브라질 등)

- 투자제한 조치를 어떤 경우에도 사용 금지토록 할 수는 없으며 단지 무역제한 효과만을 제거토록 하여야 함.

○새로운 규범제정 여부

- 선진국 : 별도 code 제정을 선호하며 현행 규정만으로는 TRIMs 규제가 어려우므로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여야 함.
- 중도국 : 별도 code 제정에 반대하며 새로운 규범을 최소한에 그쳐야 함.
- 개도국 : 새로운 규범 제정에 반대

○개발측면의 고려

- 선진국

- 개도국은 유예기간을 선진국보다 장기간 둘 수 있음

- 중도국

- 개도국의 경우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조치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개도국 (인도, 브라질 등)

- 모든 투자조치는 개발 측면의 필요성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음

- (라) 우리나라 입장

○기본입장

- 한국은 투자에 있어 수혜국인 동시에 공여국으로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 ('93부터 거의 완전 자유화됨) 하고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현재의 정책기조로 보아 New Issues 중 가장 선진국 입장과 가까움

- 그러나 많은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선진국의 입장을 지지하되 개도국의 입장도 동시에 고려함.

○투자제한 조치의 범위 및 규제방법

- 모든 투자 제한 조치는 각국의 경제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거되어야 함.

- 투자제한 조치의 원칙적 사용 금지는 무역에 증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제한 조치에 한정되어야 함.

- 국산품 사용의무, 수출의무

- 새로운 규범 제정 여부: 별도 code 제정에 반대하며 새로운 규범은 최소한에 그쳐야 함.

- 개발 측면의 고려: 개도국의 경우,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 조치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5. 무역관련 지적소유권 (TRIPs)

- (가) 협상목표

무역관련 지적소유권의 적정한 보호기준, 시행절차, 분쟁해결절차 및 경과조치의 마련

- (나) 협상진전상황

협상 요소의 기본 골격에 대하여는 선진국과 중도국간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개도국과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상존하나 선진국들은 금년내 협정 제정을 목표로 협상 진전을 서두르는 반면, 개도국들은 섬유, 농산물 등

자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룹의 협상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협상을 지연시키려 한다.

따라서 EC ('90. 4), 미국 ('90. 5), 12개 개도국 공동 ('90. 5), 스위스 ('90. 5)는 자국이 작성한 협정 초안을 공식 회의에서 제안하고 7월 TNC에 제출한 의장보고서는 전적으로 의장 책임하에 작성된 것이며 어떤 협상 참가국도 합의한 바가 없다는 전제하에 확정되어 하반기 협상의 기초가 될 것이며 동 보고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을 반영하는 2개 approach로 구성되어 있다.

- (다) 쟁점사항

○보호대상

- 선진국, 중도국: 영업 비밀권을 포함한 8개 분야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반도체집 lay-out, 디자인,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권)

- 개도국: GATT내 보호기준 설정에 기본적으로 반대

○보호정도, 보호기간, 강제실시권 등

- 선진국: 최대한으로 강화된 보호기준 제시

- 특허기간: 20년, 불실시에 의한 강제실시권 불인정 등

- 중도국

- 보다 단기간의 보호기간 인정 (특허기간: 15년), 불실시에 의한 강제 실시권 인정 및 새로운 지적소유권 분야의 권리범위 축소 등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사용 측면의 균형을 강조한 기준 제시

- 개도국: 강제실시권의 폭넓은 허용을 통한 기술이전 도모 등 지적소유권 보호보다는 이용 측면을 강조

○시행절차

- 선진국: 보다 구체적이고 보호측면을 강조한 국경간 및 국내 시행절차 제시

- 중도국

- 시행절차에 대한 일반 원칙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국내법에 위임하여야 하며 과도한 시행절차로 인한 Saf-

eguards 장치가 필요함.

- 개도국

- 각국의 입법체제가 상이하므로 보호를 위한 시행절차는 각국에 위임 단, 위조 상품 교역방지를 위한 국경절차 개정에 한정되어야 함.

○협정결과 이행 주관 국제기구

- 선진국, 중도국 : GATT
- 개도국 : WIPO

(라) 우리나라 입장

○기본입장

- 지적소유권에 대한 규범의 GATT내 제정을 지지
 - 우리나라의 보호 수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며 GATT 내에서 다자간 규범이 제정되지 못할시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임
-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사용측면의 균형도도
 - 향후 첨단기술의 도입이 격증할 것이므로

로 권리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우리나라보다 기술 수준이 뒤떨어진 보다 많은 개도국 참여를 유도

- 보호대상 : 영업비밀권을 포함한 8개 분야
- 보호정도 : 보다 단기간의 보호기간 인정, 불실시에 의한 강제 실시권 인정 및 새로운 지적소유권 분야의 권리범위 축소 등 지적소유권 보호와 사용 측면의 균형을 강조한 기준 제시
- 시행절차 : 국경간 및 국내 시행 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나 국제 규범에는 시행 절차에 대한 일반원칙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국내법에 위임되어야 하며 과도한 시행 절차로 인한 Safeguards 장치가 필요함.
- 협정 결과의 국제적 이행 담당기구 : 주로 GATT에서 담당하되 WIPO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함.

